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5차)

|              |  |      |          |
|--------------|--|------|----------|
| 개최일시         | 2025. 7. 16(수) 10:00 ~ 12:00   | 회의장소 | 진선미관 진관홀 |
| 참석자<br>(12명) |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서유리(대학원 학생회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신동희(교무처장),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승연(관리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이준엽(기획처장), 이창온(총무처장), 최정아(학생처장)  |      |          |
| 불참자<br>(1명)  | 윤정원(한영회계법인)  |      |          |
| 회의<br>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및 운영 개선 관련 논의  |      |          |
| 내<br>용       |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이 보직발령에 따라 교직원위원의 변동이 있었음을 알리고, 신규 위촉된 관리처장을 소개하다.</li> <li>- 위원장이 참석위원 전원이 '위원회 준수사항 및 보안 유지 동의서'를 작성하여 녹음을 개시함을 알리다.</li> <li>-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li> <li>- 예산팀장이 회의록 간서명을 진행할 대표위원 3인을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위원장과 기획처장, 학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안내하다.</li> <li>-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의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li> <li>※ 위원 중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는 개회 이후 입장하여, 최종 참석인원은 12명임.</li> </ul> <p>■ 회의내용</p> |      |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Redacted] |     |     |

|  |  |
|--|--|
|  | <p>- 위원장이 5차 등심위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체적인 학생위원 발언 후 교직원위원의 답변과 제안 사항을 발언하고, 교직원위원 제안사항에 대해 학생위원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모든 위원이 학교와 학생의 발전을 위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p>   |
|  | <p>- 위원장이 학생위원들이 사전에 송부한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학생요구안 설명을 요청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자료 사전 송부 조항 신설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회의 당일 2시간 전 열람으로는 실질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기 어려우며, 지난 등심위에서는 회의자료를 전자메일로 사전에 송부받았는데 앞으로도 등심위 회의자료를 3일 전 모든 위원의 전자메일로 송부하기를 요청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 간 최소 간격 보장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2024, 2025년 모두 1,2차 등심위가 이틀 연속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회의 진행은 문제가 있으므로 등심위 회의 간에는 최소 3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을 발언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의 일정 제안 방식의 교차 운영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현재 등심위는 회의 일정이 대부분 학교 측의 제안과 일정 조율에 따라 구성되어 왔고, 학생 측 의견이 회의 일정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회의 일정을 학생 측과 학교 측이 번갈아가며 제안하는 방식을 제안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외부전문가와 학생위원 간 사전 면담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등심위 구조는 학생위원 6인, 교직원위원 6인, 외부전문가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위원이 대부분 학교 측 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내고 학생위원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전문가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생위원과의 사전 면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p>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심위 개최일과 이사회 협의일 간의 간격 보장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1월 17일에 2025년 3차 등심위가 개최, 1월 20일 이사회 회의가 진행되어 3차 등심위에서 모든 안건 의결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등심위가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이사회가 진행된다면 등심위가 형식이 되어버림을 지적하다. 학생 측 논의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등심위 이후 이사회까지 최소 5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다.</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개회 가능 기준의 민주적 개선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현재 내규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가능하므로 학생위원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도 개회가 가능하며, 각 구성 단위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회 가능 기준을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다.</p>   |
|  |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안건별 논의 시간 및 순서의 민주적인 조율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부속병원회계 안건이 있을 경우 병원 외부 인사가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요한 안건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여 사전에 기획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등,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사전에 안건별 예상 시간과 순서를 조율하고 회의장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논의 공식 안건 상정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매년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고, 2025년 3차 등심위에서 급하게 등록금 인상안이 제기되면서 학생요구안이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언급하며,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에 대한 안건 상정과 논의가 필요함을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안건 상정과 예산안 책정 및 등록금 책정 회의 회차 보장을 위한 12월 등심위 개회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2025년 등심위는 1월 7일에 예산안, 1월 8일에 등록금 책정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학생요구안은 상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등심위는 합리적 등록금 책정을 위한 회의기구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요구안 논의는 필수 불가결한 안건이므로, 이를 위해 12월부터 논의가 필요함을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교내 구성원 참관 가능 허용 및 참관인의 발언 허용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예산과 등록금 책정 논의를 위하여 12월 등심위 개회가 필요하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차년도 학생 대표자의 참관과 발언이 필요함을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사회 측 위원 1인 공식 등심위 위원 추가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법인전입금이 학교 예산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이사회의 의견이 학교 재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교직원위원 중 1인을 이사회 측 인원으로 변경하거나, 이사회 측 인원이 참관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내규 개정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제시한 구조 관련 개선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며, 전체 위원 2/3 이상의</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해야 함을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차년도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해 설명하다. 2025학년도 등록금은 회의 도중 졸속적으로 인상안이 제출되었으며, 학생 측은 학교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학생위원들은 11시간 동안 명확히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였음을 언급하다. 차년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학교 본부가 재정 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p>  |
|  | <p>- 총무처장이 규정 관련 요구안에 대해 개최 가능 기준의 민주적 개선 요구 관련하여 개최 가능 요건은 고등교육법 11조 12항에 의하면 등락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대학 등락금에 관한 규칙 2조 7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교 내규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음을 답변하다.</p> <p>- 총무처장이 이사회 측 위원 1인 공식 등심위 위원 추가 요구에 대해 우리 대학은 위원수가 13명으로 위원이 가장 많은 대학 중 하나이므로 위원 추가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실제로 등록금 책정이나 예결산 과정에서 이사회가 관여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 결정을 수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답변하다.</p> <p>- 총무처장이 등심위 내규 개정 요구에 대해 회칙을 개정한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내규 개정은 어려우며, 학생위원 6명, 교직원위원 6명, 외부전문가위원 1명인 등심위 구성은 비민주적인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법 11조 3항에 따라 모든 구성단위가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서 외부위원이 추가되도록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임을 알리다.</p> <p>- 총무처장이 차년도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해 답변하다. 등록금 책정은 구조 개선 관련 등심위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고, 차년도 등록금은 차기 위원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님을 설명하다.</p> <p>- 기획처장이 외부 전문가와 학생위원 간 사전 면담 요구에 대해 외부 전문가위원은 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므로 4대 회계법인 임원 중 동문인분을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음을 알리다. 한정적인 대상자 중에 학교회계를 이해하고 등심위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분을 어렵게 모셨고, 2023년 외부전문가위원 위촉시 학생위원과 상의했음을 언급하다.</p> <p>- 기획처장이 안건별 논의 시간 및 순서의 민주적인 조율 요구에 대해 교직원위원도 등심위 회의가 합의된 형식과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며,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양해가 있다면 의료원의 발표를 포함하여 안전별로 정해진 시간과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학생요구안 안전 상정과 예산안 책정 및 등록금 책정 회의 회차 보장을 위한 12월 등심위 개최 요구에 대해, 학생요구안 안전 상정은 별개로 12월 등심위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고, 조율된 안전에 대해 합의된 시간 내에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하다.</p>  |
|  | <p>- 기획처장이 등심위 교내 구성원 참관 가능 허용 및 참관인의 발언 허용 요구에 대해 1월부터 시작되는 총학생회 학생위원 임기와 차년도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12월 등심위를 고려하면 학생위원 요구는 이해하나, 대표성을 고려시 두 총학생회 위원이 모두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학생위원간 합의할 경우 내규 변경하여 12월 새 총학생회 구성 시 등심위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하다.</p> <p>- 학생처장이 학생요구안 논의 공식 안전 상정 요구에 대해 올해 학생처는 학생요구안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한 바 있고 전례없던 처장과의 임시협의 회를 진행하였으며 정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학생요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하여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등심위 회의 대신 학생처와 상의해서 학생요구안 논의를 바란다고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요구안과 상충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은 학생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므로 등심위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정기 실무 협의회는 처장단이 참석하지 않으므로 처장단이 참석하는 등심위에서의 학생요구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p> <p>- 기획처장이 교직원위원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전체적인 답변 후 논의할 것을 제안하다.</p> <p>- 예산팀장이 회의자료 사전 송부 조항 신설 요구에 대해 회의 일시는 7일 전 공지 및 회의 자료는 5일 전 송부하여야 하는 법적 기한이 있으며, 학교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회의 자료를 5일 전에 송부해 왔고, 상세 논의 자료는 회의 당일에 사전 열람으로 제공하면서 예산팀장이 배석하여 학생위원 질문에 답변하였다고 설명하다. 2025년 3차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요구에 따라 4차 등심위에서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메일 송부한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다만 3일 전 송부를 하면서 회의 회차도 늘어난다면 충실한 자료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p> <p>- 예산팀장이 회의 간 최소 간격 보장 요구에 대해 연속된 회의 일정</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등심위 운영 실무부서인 예산팀임을 설명하며 학생위원 요구에 공감을 표하다. 다만, 법적 기준인 7명을 크게 초과하는 13명 위원수에 따라 모든 위원이 참석가능한 일정 조율이 매우 어렵고 향후 회차가 늘어난다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을 부연설명하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다.</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팀장이 등심위 개회일과 이사회 협의일 간의 간격 보장 요구에 대해 예결산(안)의 승인절차(기금운용심의회, 대학평의원회(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를 설명하다.</li> <li>- 예산팀장이 회의 일정 제안 방식의 교차 운영 요구에 대해 학생위원 가능 일정이 먼저 제안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일정을 정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시간과 노력만 더 소요됨을 설명하다.</li> <li>- 관리처장이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시 위원 서명과 이름이 함께 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명 일부를 가리는 의견을 제안하다. 또한, 회의록이 지나치게 상세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지면서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주요 의사 결정 과정과 회의 과정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다.</li> <li>- 학부 총학생회장이 서명 관련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작성하여 공개하는 것은 학교 측과 몇 년간 정리하였던 내용이므로 축소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다.</li> <li>- 관리처장이 서명은 캡처 등의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회의록에 모두 노출시키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li> <li>-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름이 아닌 서명만 가리는 제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회의록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고 가독성을 위해서라면 주요 결정사항 등을 정리하여 따로 표기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다.</li> <li>- 학부 총학생회장이 현재의 회의록은 학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며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등록금 책정과 같은 예민한 논의에 대해서는 전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하다.</li> <li>- 기획처장이 당초에 회의록을 자세히 작성하여 공개하기로 했던 취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진행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회의 내용 공유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은 전체 회의의</li> </ul>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맥락이나 내용을 파악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음을 설명하다. 다만 회의록을 완전히 축약해서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작성하자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현재의 회의록으로 충분히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분위기나 니앙스도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기에 회의록에 가감없이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히다.</p>  |
|  | <p>-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이 참관인을 요청하여 참관 대신 회의록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참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다.</p>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며 위원 본인도 모든 발언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상세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녹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답변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없는데 회의록을 축약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 자료 사전 송부 관련하여, 보안 유지서를 작성하면 발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확인하다.</p> <p>- 예산팀장이 2025년 4차 등심위와 동일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p> <p>- 기획처장이 회의자료 사전 송부는 내규 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성격은 아니므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3일 전 이메일로 송부할 것이며, 일정을 미리 잡아 정해진 시간으로 회차를 늘리고 안건을 분리하면 자료작성과 회의록 작성 시 시간에 쫓기는 어려움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께서 시간을 제한하여 장시간 회의를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가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11시간 회의도 상충되는 의견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2024년 12월 등심위에서 안건이 예상과 다르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책정만 상정되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올해 12월 개회 시 학부 등록금 책정 안건이 다뤄질 것인지 질의하다.</p> <p>- 기획처장이 회의 자료를 사전 송부하면서 회의 시간도 충분히 보장</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되면 좋으나 예년과 같은 일정으로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1월에 하던 회의를 1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며, 12월 회의를 지금 확정하기보다는 추경예산, 대학원, 외국인 등록금 책정 등 사전에 진행하면 적당한 안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 12월 회의의 안건이나 회의 순서 등은 추후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발언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학생위원 측에서도 대학원, 외국인 등록금 책정 등은 빠른 진행이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언급하다.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이 졸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타 학교의 경우는 12월 등심위에서부터 등록금 인상을 제기하며 충분한 논의가 되어 학생 측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알리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12월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책정에 대해 윤곽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발언하다.</li> <li>- 예산팀장이 1월에는 위원 변경이 발생함을 언급하다.</li> <li>- 기획처장이 12월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 책정 안건은 위원 변경으로 인해 다른 안건과는 성격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총학생회에서 어떤 운영을 바라는지 의견을 주면 회의 안건이나 논의의 수준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현재의 총학생회와 차기 총학생회가 모두 발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발언하다.</li> <li>-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현재 총학생회와 차기 총학생회가 왜 다른 입장일 것이라고 보는지 의문을 표하며, 또한 다르더라도 발언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다.</li> <li>-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은 대표성을 가지고 정해진 임기 내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고, 새롭게 구성된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정책이 이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되는 총학생회와 논의를 시작해야 함을 설명하다.</li> <li>- 기획처장이 기존 위원들과 논의를 시작한 후 변경된 차기 위원들과 그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12월에 총학생회가 선출되어 대표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향후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므로 12월 운영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내부에서 의견을 정하면 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li> <li>-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직원위원 측은 회의 정식 안건을 보수적으로 봐서 학생요구안도 매번 상정하지 않는데 학생위원 측은 등심위에서 안건 심의·의결 뿐 아니라 후속 논의나 등록금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으며, 12월 등심위에서도 학부 등록금 책정, 예산안 심의</li> </ul> |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를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책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정도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또한 위원 변경의 문제가 있으면 차기 위원을 참관인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다.</p> <p>- 기획처장이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도 회의 자리에서 바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기 협의체 등 기존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학교에서 가용한 재원을 확보하여 배정하고, 추후 추경예산 심의 시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추가 요청이 있으면 또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우선 등록금 인상을 가정한 운영방식을 언급한 게 아니고 졸속적인 인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알리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공식 안건 상정은 차원이 다른 의미이며, 질의응답만으로 학생요구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언하다.</p> <p>- 예산팀장이 교직원위원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 처장이라는 이유로 학생요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다. 학생요구안은 학생처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하고, 필요시 해당 협의체 운영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다. 모든 위원회는 본연의 기능이 있으며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과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고, 법적 준수사항도 많기 때문에 협의체 역할 수행에 부합하지 않은 회의체라고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책정과 학생요구안이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다.</p> <p>- 기획처장이 학생요구안 중 대규모의 투자,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결산과 관련한 부분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등심위 회의 중 논의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기존 채널에서 논의하고 추경예산 심의 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적절해 보이며, 요구안 전체를 다루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기에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p> <p>- 학생처장이 학생요구안을 등심위에서 다루는 대학은 확인하기 어렵고, 타 대학 또한 올해 인상분에 한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에 대해 실무협의체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으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각 단대에서도 중앙으로 요청하라고 하기에 결국 등심위에서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다양한 협의체</p> |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등에서 그런 부분이 잘 조정되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또한 회의 일정 교차 제안이 크게 의미가 없다면 현재 3개안 정도로 제안하는 것을 5개안으로 제안해줄 수 있을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최대한 많은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하다.</p>   |
|  | <p>- 위원장이 올해는 회의 일정 제안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처장 등 위원들의 일정이 바쁘지만 미리 정하면 좀 더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안건 순서 관련 기술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다.</p> <p>- 기획처장이 회의 회차를 확대하면 한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게 되므로 회의 시간과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부속병원회계 안건을 회의 초반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다.</p> <p>- 위원장이 논의 안건 순서는 당연히 학교 안건이 우선되어야 하나 학생위원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다.</p> <p>-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의시간 순서를 민주적으로 조율하고자 했던 이유는 병원 관계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빨리 의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으며, 현재의 위원 구성상 외부전문가위원이 대부분 교직원위원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부당한 안건에 대해서 학생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안건 의결이 가능하므로 개회 기준을 과반수에서 바꿀 수 없다면 각 구성단위에서 최소 1명 참석해야 개회가능하도록 학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다.</p> <p>- 총무처장이 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각 구성 단위에서 뽑게 되지만 위촉 이후에는 위원으로서 학교 전체를 위해 위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며, 어느 위원회든 의결권 자체를 구성 단위별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다. 학생 측, 학교 측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본 전제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구성 단위만으로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규칙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없음을 알리다. 순수한 자문기구라면 가능하겠지만 국가에서 현재 법령으로 개회 정족수와 찬성 정족수를 정해놓은 것은 등심위가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며, 등심위의 기본적인 기능과 임무는 학교가 중요 의사결정</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을 할 때 자의적, 악의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학생위원들이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이라고 설명하다.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면 되지만 대부분 학교가 법적 상한인 10분의 5 미만까지 학생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p>  |
|  |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총무처장께서는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퇴장하여 이용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질의하다.</p> <p>- 총무처장이 학생 측, 학교 측 무관하게 위원회 의결이 필수적인 절차인 경우에 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보장해 주는 곳은 없으며, 고등교육법이나 대학등록금규칙 등에서 정족수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 둔 것은 학교도, 학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외부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해야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가 실제로 진행될 때의 양상은 항상 학교 측 의견이 7대6으로 가결이 되므로 각 구성 단위에서 최소 1명 이상 참석 시 개최하거나, 동문, 학부모 등 위원 구성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다.</p> <p>- 기획처장이 우선 항상 학교 측 의견이 7대6인 것은 아니었으며, 예를 들면 대학원 학생위원이 학교 측 의견에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외부전문가위원이 학교 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으며 무조건 학교의 의견에 찬성을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학생위원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음을 이해한다고 발언하다. 학교, 학생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각 위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회의가 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 단위의 거부권이 가능해지는 것은 적절한 회의 구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언하다.</p> <p>- 총무처장이 대부분의 위원회의 개최나 의결에 정족수 관련 거부권은 없으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2조 7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부 규칙으로 구성 단위별 단서조항을 달아도 법적으로는 구성 단위와 무관하게 과반수만 출석하여도 유효한 회의가 되므로 의미가 없음을 추가로 설명하다.</p> <p>-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인원 수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의 일자를 정하는데 있어 제한된 일자만 제안받게 되어 나온 의견이었음을 밝히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다. 회의자료는 3일 전 이메일로 송부하고, 12월 등심위는 개최하며 회차를 늘려 안건을 집중 논의하도록 하고, 학부 등록금을 다룰지 여</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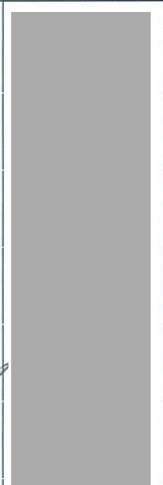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부는 추후 논의하며, 회의 일정은 촉박하지 않도록 제안하도록 하고, 차기 학생위원은 12월 등심위 참관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다.</p> <p>- 예산팀장이 참관 부분은 합의된 것이 아니고 참관 대신 위원회 임기를 차기 총학생회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전 협의체에서 총학생회 임기 자체를 바꾸는 방안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그 방법이 어렵다면 당선된 총학생회가 바로 등심위 위원으로 위촉되면 참관문제가 해결된다고 발언하다.</p>  |
|  |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024년은 참관이 가능하였는데 왜 다시 제한하는지 질의하다.</p> <p>- 예산팀장이 학생위원의 참관요구 사유상 새롭게 구성된 총학생회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다.</p> <p>- 위원장이 위원회마다 위원들마다 대표성을 가지는게 중요하므로 참관의 의미가 크지 않고, 각자 임기와 역할이 있으므로 참관을 통해서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보다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관을 통해 차기 위원에게 회의 내용을 공유한다는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며, 12월 개최시 참관인 발언 제한이 아니고 참관 자체가 안된다는 것인지 재확인하다.</p> <p>- 예산팀장이 더 나은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학생위원간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이 정식으로 위촉되기 전에 1월부터 능숙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회 정도의 참관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p> <p>- 기획처장이 대원칙은 참관 허용 대신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회의 참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참관이 아닌 실제 위원 변경을 진행한다면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임을 밝히다.</p> <p>-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의 일정이 결정되면 참관을 고려한다는 의미인지 확인하다.</p> <p>- 예산팀장이 위원 임기 변경에 대해 학생위원 측에서 검토하여 여부</p>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p>를 알려주면 그 이후 논의할 부분이며, 원칙적으로 총학생회간 인수인계는 총학생회의 몫이라고 답변하다.</p> <p>-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총학생회 임기의 문제인 건 맞으나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을 이유로 참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지 않으며, 제도를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발언하다.</p> <p>- 예산팀장이 학생 요구 사유에 더 부합한 방식을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p> <p>- 위원장이 학생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므로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차기위원을 12월에 위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면 참관인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차기위원을 12월에 위촉하는 것은 내규에 맞지 않으므로 내규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오늘 회의에서 합의한 회의 일자간의 기간 조정, 보안 유지서 발송 하에 사전 자료 송부, 올해 12월 등심위 개회 등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 추후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겠다고 발언하다.</p> <p>- 위원장이 많은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된 회의였으며, 12월에도 최대한 다양한 일정을 확보하여 회의 개회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다.</p> |
|--|---|

|     |     |     |     |
|-----|-----|-----|-----|
| 간서명 | 반지민 | 신동희 | 이준엽 |
|-----|-----|-----|-----|

|              |   |            |   |            |            |   |
|--------------|---|------------|---|------------|------------|---|
|              | <p>■ 폐회</p> <p>- 위원장이 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p>   |            |   |            |            |   |
| <p>확 인</p>   |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7월 16일</p>   |            |   |            |            |   |
|              | <p>직 위</p>  | <p>성 명</p> | <p>서 명</p>  | <p>직 위</p> | <p>성 명</p> | <p>서 명</p>  |
|              | <p>위원장</p>  | <p>신동희</p> |  | <p>위 원</p> | <p>이다연</p> |  |
|              | <p>위 원</p>  | <p>김수민</p> |   | <p>위 원</p> | <p>이승연</p> |   |
|              | <p>위 원</p>  | <p>반지민</p> |   | <p>위 원</p> | <p>이주연</p> |   |
|              | <p>위 원</p>  | <p>서유리</p> |   | <p>위 원</p> | <p>이준엽</p> |   |
|              | <p>위 원</p>  | <p>석지우</p> |   | <p>위 원</p> | <p>이창온</p> |   |
|              | <p>위 원</p>  | <p>송수진</p> |   | <p>위 원</p> | <p>최정아</p> |   |
|              | <p>위 원</p>  | <p>윤정원</p> |   | <p>불참</p>  |            |   |
| <p>작 성 자</p> | <p style="text-align: right;">예산팀 김민중 </p> |            |   |            |            |   |